

2008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(주민생활지원국 소관)

P203

《기초생활보장-기초생활수급자지원》

■ 사업명 :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▷ 추가증 1,823,347천원

가. 경정 26,806,050천원, 기정 24,982,703천원

국비 945,691천원, 시비 73,547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국·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161,379원 × 13,800여명 × 12월

P204

■ 사업명 : 주거급여 ▷ 추가증 392,265천원

가. 경정 7,518,219천원, 기정 7,125,954천원

국비 149,980천원, 시비 16,759천원, 구비 225,526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국·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41,996원 × 14,900여명 × 12월

■ 사업명 : 수급자 교육급여 ▷ 추가증 411,154천원

가. 경정 1,291,679천원, 기정 880,525천원

국비 345,535천원, 시비 26,872천원, 구비 38,747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국·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- 수업료 351,600원 × 820(여)명 × 4회 = 1,153,248천원

- 교과서대 지원 106,000원 × 820(여)명 = 86,920천원

- 학용품비 등 54,000원 × 820(여)명 = 44,280천원

P205

■ 사업명 : 해산장제급여 ▷ 추가증 5,717천원

가. 경정 169,343천원, 기정 163,626천원

국비 149,980천원, 시비 16,759천원, 구비 225,526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국·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500,000원 × 338명

■ 사업명 : 수급자 난방비지원 ▷추가증 388,991천원

가. 경정 388,991천원, 기정 0천원
국비 350,095천원, 시비 27,227천원, 구비 11,669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국·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24,000원 × 8,100세대 × 2월

P206

《기초생활보장-차상위계층 지원》

■ 사업명 :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 긴급 구호비 지원 ▷경정감△594,820천원

가. 경정 0천원, 기정 594,820천원
시비 594,820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《기초생활보장-차상위계층 지원-차상위계층 양곡지원》

■ 사업명 : 차상위계층양곡지원 ▷추가증 20,240천원

가. 경정 30,476천원, 기정 50,716천원
국비 16,192천원, 시비 2,024천원, 구비 2,024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국·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22,050원 × 460포 × 5월

P207

《기초생활보장-차상위계층 지원-긴급복지》

■ 사업명 : 긴급복지 ▷경정감 18,847천원

가. 경정 171,250천원, 기정 190,097천원
국비 △15,077천원, 시비 △1,885천원, 구비 △1,885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국비 보조금 감소

- 지원근거 :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, 제8조 제3항,
- 재 원 : 국비(80%), 시비(10%), 구비(10%)

○ 주요 지원대상

- 주 소득자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,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, 가족들의 소득이 없을 경우
- 중한질병, 부상을 당할 때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, 성폭력 등
- 화재 등으로 거주주택에서 생활영위 곤란
-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 된 때 등

○ 지원기준

(단위:천원)

지원대상	의료비	1~6인 차등 지원			연료비	해산비	장제비	전기요금
		생계비	주거비	사회복지 시설이용				
지원기준	3,000	463~1,712	281~619	387~1,433	월 66	1회 500	1회 500	1회 500

○ 2008 긴급복지 지원실적(2008.05. 31.현재)

- 신청 78건, 승인 76건, 미승인 2(지원조건)
- 지원금액 : 57건 90,594천원 ▷ 의료지원 53건 88,044,

생계비 2건 2,050,장제비 1건 500

《기초생활보장-차상위계층 지원-무연고사망자 처리》

■ 사업명 : 무연고사망자 사체처리 위탁료 ▷경정감 100천원

가. 경정 1,900천원, 기정 2,000천원

나. 변경사유 ; 5% 예산절감

《기초생활보장-차상위계층 지원-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》

■ 사업명 :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금 ▷경정감 1,000천원

가. 경정 19,000천원, 기정 20,000천원

나. 변경사유 ; 5% 예산절감

○ 산출근거 : 소송 진행 중인 보증채무 전세자금 2건 원금(15,000천원)

+ 이자 발생분

○ 배상근거

- 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매년 초 지방자치 단체의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얻어 은행과 융자지

원협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융자시행 ▷ **동장, 가옥주가 채무 연대보증**

- 은행이 전세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로 손실보전 청구, **구청장은 손실보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관리**▷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제6조, 7조, 제8조(손실보전)

※2000.6.25이후 신규 대출 전세자금은 지자체와 융자지원 협약채결 없이 구에서 승인한 자에 한하여 은행에서 융자실행 ▷**구청 동의 폐지, 은행기준에 의한 보증인 또는 신용보증기금 활용**

○ 보증채무 전세자금 대여금 미상환 현황(단위: 천원)

구 분	건수	대출액	분할상환 중		손실보존 소송제기 건수	소송 제기시 전망 등
			건수	금액		
합 계	27	145,000	4	21,300	10	
소멸시효 완성	17	84,500			4 (원고 소취하)	· 17건 모두 소멸시효(5년) 완성이므로 변제 의무 없음
소 멸 시 효 미완성	소 계	10	4	21,300	6	
	대위변제	1	1	7,000	1 (우리 구 패 소)	· 07. 8. 20 대위변제로 구상 (환수)결정 통보 9,599,480원
	소송진행중	5	1	6,300	5	· 손실보전의무 있으나 소송결과에 따라 대위변제
	소 미제기 등	4	2	8,000		

- 원고 소 취하 사유 :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5년이 경과되면 채권 시효 소멸이 되므로 승소할 확률이 없어 소 취하

▷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소멸 시효기간은 5년임

- 우리 구 패소사유 : '99년 협약서에 의거 1999.4.7 대출, 소멸시효 기간 완성(2008.4.6) 전에 소송청구 (2007.3.6)로 패소

▷ 07.8.20, 9,599천원(원금7,000천원+이자 및 소송비 2,599천원)

- 진행 중인 소송(5건) 전망 : 상기와 동일사향으로 대위변제예상

▷ 2008년도 19,000천원 예산요구

- ※ 부산시 구·군의 경우 해운대구에서 2000년도 11건 8,000여만원 (연체이자 미보전) 손실보전 사례 있음

○ 은행 손실보전방안

- 연체이자(연 8.5%)로 인한 채무보증액 증가가 예상되나 **손실보전에 앞서**

은행과 협의 채권압류 조치토록 하고

- 채무 보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유도
- ▷ 체납자 일제 실태 조사 시 등

P208

《복지기반조성-사회복지시설운영-사회복지관 운영-민간이전》

■ 사업명 : 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 ▷ 추가증 233,902천원

- 가. 경정 1,568,702천원, 기정 1,334,800천원
시비 233,902천원 추가증
- 나. 산출근거 :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《복지기반조성-사회복지관 운영-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-민간이전》

■ 사업명 :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지원 ▷ 추가증 10,995천원

- 가. 경정 344,705천원, 기정 333,710천원
시비 10,995천원 추가증
- 나. 산출근거 :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P209

《복지기반조성-사회복지관운영-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프로그램 운영-민간이전》

■ 사업명 :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프로그램 운영 ▷ 추가증 24,000천원

- 가. 경정 60,000천원, 기정 36,000천원
시비 24,000천원 추가증
- 나. 산출근거 :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《복지기반조성-복지관운영-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비지원-민간이전》

■ 사업명 :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밀집지역 목욕탕 운영비지원

▷ 추가증 12,000천원

- 가. 경정 24,000천원, 기정 12,000천원
시비 12,000천원 추가증
- 나. 산출근거 :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《복지기반조성-복지관운영-두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바-민간자본보조》

■ 사업명 :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▷ 추가증 39,873천원

- 가. 경정 39,873천원, 기정 0천원
 시비 27,900천원, 구비 11,973천원 추가증
- 나. 산출근거 :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

《복지기반조성-자원봉사 확대》

P210

■ 사업명 :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▷ 추가증 2천원

- 가. 경정 29,898천원, 기정29,896천원
 국비 1천원, 구비 1천원 추가증(국비 50%, 구비50%)
- 나. 산출근거 : 국비 지원사업 변경내시
 - 경정사유 : 국비 1천원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률 증액
 - ▷ 국·구비 각 50%

구 분	활 동 내 용	인건비 산출 내역	비 고
교육 코디네이터	·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운동 · 상담 및 관리, 자원봉사 의식 고취 및 홍보 등	· 4대보험 포함 월 1,405천원x12개월 = 16,860천원	2008 『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』 운영 지침
D/B 코디네이터	· 자원봉사 D/B 구축 및 관리 ·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(수요공급 등 통계관리) 등	· 4대보험 포함 월 1,086천원 x 12개월 = 13,032천원	

■ 사업명 : 청년실업해소 구·군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▷ 추가증 8,400천원

- 가. 경정 16,800천원, 기정 8,400천원
 구비 8,400천원 추가증
- 나. 산출근거 : 시비 50%, 구비 50%로 편성하여야 하므로 구비 미 편성분
 8,400천원 추가증
 - 경정사유 : 자원봉사센터 상근간사 인건비 보전을 위한 구비 확보
 - ▷ 시·구비 각 50%

활 동 내 용	인건비 산출 내역
· 자원봉사 발굴 및 수요공급연계, 개인·단체관리 ·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행 및 홍보, 자원봉사자 보험관리 센터자체 각종 사업추진 등	·4대 보험 포함 월 1,400천원x12개월=16,800천원 ※ 별정 8급 상당 적용(기본급 1,154,400원)

○ 상근간사 보충급여 : 700,000원 x2월 = 8,400천원

▷ 4대 보험료 포함

※ 상근간사 4대 보험료 지원(본임 부담금) = 1,172천원

· 건강보험 29,320원 X 12개월 = 351,840원,

· 국민연금 51,940원 X 12개월 = 623,280원

· 고용보험 8,080원 X 12개월 = 96,960원,

· 산재보험 8,310원 X 12개월 = 99,720원

4대 보험료 부담률 (본봉기준)	국민연금		9%	본인, 사업주 각 50%	건강보험	5.08%	본인, 사업주 각50%
	고용 보험	실업급여	0.9%	본인, 사업주 각 50%	산재보험	0,72%	사업주만 부담
	고용안정	0.25%	사업주 부담				

P211

■ 사업명 : 구·군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▷ 추가증 26,462천원

가. 경정 31,962천원, 기정 5,500천원

구비 26,462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

○ 자원봉사센터 현황

· 소재지 : 신평1동 545-2번지(공영주차장)내 구청 별관으로 이전

· 직원수 : 정원 6명

▷ 현원 5명 : 센터장 1, 국장 1, 사무원 1, 전문코디 2명

※ 센터장 1명(비상근, 명예직),

국장 1명(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겸임), 실제 상근직원은 3명임

· 자원봉사자수 : 21,957명

▷ 일반 7,493명, 단체 333개 단체 14,464명

○ 운영비 : 본 예산에 미 편성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구비 부담금 확보

31,962천원 ▷ 시비 5,500, 구비 26,4620

년도별	계	업무추진비 및 수당 등	일반운영비	사업비	비고
2008	31,962천원	8,612	9,690	13,660	2007년 대비 11,600 증
2007	20,362천원	6,672	4,103	9,587	

■ 사업명 :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▷ 추가증 232천원

가. 경정 16,230천원, 기정 15,998천원

국비 116천원, 구비 116천원 추가증(국비 50%, 구비 50%)

나. 산출근거 : 760원*21,408명=16,230천원 추가증

○ 경정사유 : 국비 추가배정 (116천원)에 따른 구비 추가확보

▷국·구비 각 50%

· 확보사유 : 자원봉사자 활동 중 상해 시 보상

· 편성기준 : 760원 X 21,408명 = 16,230천원

▷ 2008. 4월말 현재 자원봉사자수 21,957명

■ 사업명 :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비 지원▷ 추가증 9,700천원

가. 경정 9,700천원, 기정 0천원

시비 9,700천원 추가증(시비 100%)

나. 산출근거 : 자원봉사자를 위한 걷기대회 지원 7,000천원, 자원봉사센터 홍보 등 2,700천원 추가증

○ 사업목적 : 전액 시비로 자원봉사센터 기능 활성화, 시민의 참여유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

○ 사업내용

· 자원봉사센터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(조끼, 기념품, 리플릿 등 제작) = 2,700천원

· 자원봉사자 걷기대회 행사비(홍보비, 기념품, 부상, 이벤트 행사비) = 7,000천원

P212

《복지기반조성-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》

■ 사업명 : 지역서비스혁신사업 ▷ 추가증 3,000천원

가. 경정 3,000천원, 기정 0천원

국비 3,000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국비 지원사업 변경내시

《복지기반조성-복지행정 서비스 강화-사회복지 홍보》

■ 사업명 : 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 ▷ 경정감 △ 90천원

가. 경정 2,910천원, 기정 3,000천원

90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3% 예산절감

《복지기반조성-복지행정 서비스 강화-복지전문성 강화》

■ 사업명 : 방문상담용 통신장비 사용료 ▷ 추가증 30천원

가. 경정 1,059천원, 기정 1,029천원

30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잔여월에 대한 통신료(기본료 25천원+부가가치세)

P213

《복지기반조성-복지행정 서비스 강화-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》

■ 사업명 :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공통기반 구축 ▷ 경정감 △ 440천원

가. 경정 8,360천원, 기정 8,800천원

440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5% 예산절감

《복지기반조성-복지행정 서비스 강화-위원회 운영》

■ 사업명 :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▷ 경정감 6,790천원

가. 경정 1,050천원, 기정 7,840천원

6,790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예산집중관리로 예산 경정감

■ 사업명 :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▷ 경정감 1,960천원

가. 경정 1,190천원, 기정 3,150천원

1,960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예산집중관리로 예산 경정감

《복지기반조성-복지행정 서비스 강화-사회복지 시책추진》

■ 사업명 : 시책추진업무추진지 ▷ **경정감 1,189천원**

☞ 주민생활지원국 시책추진 ▷ **경정감 160천원**

경정 3,040천원, 기정 3,200천원 ▷ 5%예산절감으로 160천원 경정감

☞ 모범저소득 보훈단체 위문 ▷ **경정감 150천원**

경정 2,850천원, 기정 3,000천원 ▷ 5%예산절감으로 150천원 경정감

☞ 복지시책추진 ▷ **경정감 175천원**

경정 3,325천원, 기정 3,500천원 ▷ 5%예산절감으로 175천원 경정감

☞ 북한이탈주민 관계자 간담회 ▷ **경정감 24천원**

경정 456천원, 기정 480천원 ▷ 5%예산절감으로 24천원 경정감

☞ 안부전화 및 방문상담서비스 관계자 간담회 ▷ **경정감 40천원**

경정 760천원, 기정 800천원 ▷ 5% 예산절감으로 40천원 경정감

☞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▷ **경정감 640천원**

경정 12,160천원, 기정 12,800천원 ▷ 5%예산절감으로 640천원 경정감

《복지기반조성-복행정운영경바-인력운영비》

■ 사업명 :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▷ **경정감 150천원**

가. 경정 2,850천원, 기정 3,000천원

150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5% 예산절감

■ 사업명 :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▷ **경정감 168천원**

가. 경정 3,192천원, 기정 3,360천원

168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5% 예산절감

P214

《복지기반조성-복행정운영경바-기본경바-사무관리비》

■ 사업명 : 부서운영수용비 ▷ **경정감 420천원**

가. 경정 7,980천원, 기정 8,400천원
420천원 경정감

나. 산출근거 : 5% 예산절감

《재무활동-주민생활지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》

■ 사업명 : 국고보조금 반환금 ▷ **추가증 182,530천원**

기정 0천원, 경정 182,530천원

☞ 일반수급자생계급여 반환금 ▷ **추가증 55,152천원**

기정 0천원, 경정 55,152천원

☞ 주거급여(현금) ▷ **추가증 390천원**

기정 0천원, 경정 390천원

☞ 일반수급자교육급여 ▷ **추가증 9,576천원**

기정 0천원, 경정 9,576천원

☞ 긴급복지지원사업 ▷ **추가증 26,623천원**

기정 0천원, 경정 26,623천원

○ 2007.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 산 액				집 행 액				잔 액			
계	국비	시비	구비	계	국비	시비	구비	계	국비	시비	구비
182,652	146,122	18,265	18,265	149,373	119,499	14,937	14,938	33,278	26,623	3,328	3,327

○ 2007. 긴급복지 사업비 집행내역

계	의료비	생계비	장제비
80건 149,373천원	76건 147,034	2건 1,589	2건 750

☞ 지역사회서비스자체개발형(시) ▷ **추가증 63,629천원**

기정 0천원, 경정 63,629천원

☞ 지역사회서비스자체개발형(구) ▷ 추가증 27,160천원

기정 0원, 경정 27,160천원

■ 사업명 : 시·도비 보조금 반환금 ▷ 추가증 54,475천원

기정 0천원, 경54,475천원

☞ 일반수급자생계급여 ▷ 추가증 6,984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6,984천원

☞ 주거급여(현금) ▷ 추가증 49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49천원

P215

☞ 일반수급자교육급여 ▷ 추가증 1,197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1,197천원

☞ 자녀교통비(수급자) ▷ 추가증 897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897천원

☞ 자녀학용품비(수급자) ▷ 추가증 2,562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2,562천원

☞ 본인부담의료비 ▷ 추가증 4,417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4,417천원

☞ 생계보조비(차상위) ▷ 추가증 490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490천원

☞ 자녀교통비(차상위) ▷ 추가증 187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187천원

☞ 자녀학용품비(차상위) ▷ 추가증 63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63천원

☞ 긴급복지지원사업 ▷ 추가증 3,328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3,328천원

○ 2007.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예 산 액				집 행 액				잔 액			
계	국비	시비	구비	계	국비	시비	구비	계	국비	시비	구비
182,652	146,122	18,265	18,265	149,373	119,499	14,937	14,938	33,278	26,623	3,328	3,327

○ 2007. 긴급복지 사업비 집행내역

계	의료비	생계비	장제비
80건 149,373천원	76건 147,034	2건 1,589	2건 750

☞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건비 ▷ 추가증 1,072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1,072천원

☞ 재가복지봉사센터 ▷ 추가증 140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140천원

☞ 지역사회서비스자체개발형(시) ▷ 추가증 27,269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27,269천원

☞ 지역사회서비스자체개발형(구) ▷ 추가증 5,820천원

기정 0천원, 경정 5,820천원

의료급여 특별회계

P371

《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-국민기초생활보장》

■ 사업명 :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▷ 55,301천원

가. 경정 567,425천원, 기정 512,124천원

55,301천원 추가증

나. 산출근거 : 장애인보장구, 요양비, 의료급여관리사 급여, 보상금 등

《사회복지-사회복지일반-재무활동》

■ 사업명 : 보전지출 ▷ 추가증 59,569천원

가. 경정 0천원, 기정 59,569천원

나. 산출근거 : 반환금

《국민기초생활보장-저소득층 의료비 지원》

■ 사업명 : 과오납 등 ▷ 추가증 55,301천원

가. 경정 0천원, 기정 55,301천원

나. 산출근거 : 2007년 대불금, 부당이득금, 이자 발생분

《재무활동바보전지출-국시비보조금반환금》

■ 사업명 : 반환금 기타 ▷ 추가증 59,569천원

경정 59,569천원, 기정 0천원 추가증 59,569천원

○ 국비보조금반환금

☞ 의료급여일시사역인부임 ▷ 추가증 6,972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6,972천원

☞ 의료급여진료비 ▷ 추가증 34,884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34,884천원

P373

☞ 의료급여대불금 ▷ 추가증 2,400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2,400천원

☞ 의료급여관리요원여비 ▷ 추가증 1,052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1,052천원

☞ 2006년 반환금잔액 ▷ 추가증 1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1천원

○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

☞ 의료급여일시사역인부임 ▷ 추가증 1,743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1,743천원

☞ 의료급여업무보조 ▷ 추가증 650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650천원

☞ 급여증, 인쇄, 홍보비

▷ 추가증 578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578천원

☞ 의료급여심의위원회회의참석수당 ▷ 추가증 1,680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1,680천원

☞ 타진료구수진실태확인여비

▷ 추가증 25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25천원

☞ 의료급여관리요원여비

▷ 추가증 263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263천원

☞ 의료급여진료비

▷ 추가증 8,721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8,721천원

☞ 의료급여대불금

▷ 추가증 600천원

경정 0천원, 경정 600천원